

의안번호	제2801호
의결 연월일	2024. 7. 25. (제295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	------

##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801호
----------	--------

제출연월일: 2024. 7. 1.  
제출자: 고성군수

###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7. 1.

#### 1. 제정이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안 제3조~제4조)
- 다.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및 지급(안 제5조~제6조)
- 라.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안 제7조~제8조)
- 마. 장려금의 지급 대장 관리(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2024년 추경예산 확보 예정
- 다. 합 의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조건부 협의[사회보장조정과-8411(2023. 12. 18.)]  
→ 동 사업과 관련한 국가 사업이 신설, 혹은 변경될 경우 해당 사업도 국가 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것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4601(2024. 4. 5.)호]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602호
  - 가) 예고기간: 2024. 3. 25.~2024. 4. 15.(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 2. “수급자”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을 따른다)

3.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을 따른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제4조 지원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고성군 전입일자
	육아휴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실과 상이할 경우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수함		
자녀성명		자녀생년월일	( 남 / 여 )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청인	*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 하지 않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 남 / 여 )
	주소	도로명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핸드폰)		대상자와의 관계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3. 희망계좌 통장사본 1부.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신분증 사본 1부.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고 성 군 수 귀 하</b>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관련법령	보유기간	
성명, 주소,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입금계좌번호,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그 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동의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관련법령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및 적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5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과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보험법>

-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 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20. 3. 31.>
-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21. 12. 31.>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5. 6. 30., 2017. 6. 27., 2017. 8. 29., 2020. 3. 31., 2021. 12. 31.>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 [전문개정 2010. 12. 31.]
-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21. 12. 31.]
-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

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 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
    - 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 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
-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12. 26.]